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854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결 2020. 4. 2.

판결 선고 2020. 4. 23.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소249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5,89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항소장에서 소가를 변경하여 청구한다고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9. 3. 25. 결혼정보업체인 피고와, 피고가 원고의 딸 C에게 조건에 맞는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이하 '매칭서비스'라 한다)해주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로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2개월(계약기간) 동안 총 3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 3회의 매칭서비스 제공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매칭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 (3) 이후 피고는 2019. 4. 21. 위 C에게 첫 번째 매칭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C는 피고의 매칭서비스에 불만을 느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회원가입비 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4)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가입비의 환급)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 (잔여횟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환급하고,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5)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전면의 차. 항은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결혼중개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횟수 대신 기간으로 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시 총횟수 대비 잔여횟수의 비율 대신 총일수 대비 잔여일수의 비율로 가입비를 반환하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 (6) 피고는 원고의 회원가입비 반환 요구를 받고,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에 '잔여횟수 2회/총횟수 3회'의 비율을 적용한 160만 원을 2019. 6. 8.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횡수제가 아닌 기간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비의 80% × (잔여일수/총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회원가입비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횡수제 계약이라 보아야 하고, 계약 당시 원고에게 횡수제 계약에 따라 회원가입비가 환급됨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3회의 매칭서비스 제공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매칭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여기에 결혼중개계약에서 매칭서비스의 제공 횟수와 기간이 가지는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매칭서비스의 제공을 횟수가 아닌 기간에 의해 정한 기간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인 경우의 회원가입비 환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회원가입비의 환급은 표준약관이 정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의 경우에 따라야 할 것이다(단지 이 사건 계약서의 '총 3회' 밑에 수기로 '(탈퇴시)'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기간제 계약임에도 가입비의 환급은 횡수제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회원가입비를 계산하면, 2,215,890원{300만 원 × 80% × (365일에서 잔여일수인 2019. 3. 25.부터 2019. 4. 21.까지 28일을 뺀 337일 / 365일). 원 미만 절사. 원고는 항소장에 잔여일수 계산 기산일을 2019. 3. 23.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다}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15,890원에서 이미 피고가 지급한 160만 원을 제외한 615,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경승, 판사 박상준, 판사 인형준